##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234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4.

발 의 자:한민수·손명수·복기왕

김 현・김우영・허 영

정성호 · 김태선 · 박민규

정동영・박상혁・황 희

이기헌 · 황정아 · 박홍배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서 "전기통신설비"란 전기통신을 하기위한 기계·기구·선로 또는 그 밖의 설비로써 "전기통신사업"과는 구별되는데,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내용은 "전기통신사업"이며 그내용 역시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 불법스팸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

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서 "문자재판매사업자" 의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으므로, 이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범죄 수사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사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중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도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,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「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나 목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23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3호 중 "전기통신설비"를 "전기통신설비, 전기통신사업"으로 한다.

제6조제20호나목 중 "전기통신설비"를 "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사업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	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
법경찰관리) 다음 각 호에 규	법경찰관리)
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	
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	
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	
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	
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	
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	
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8급ㆍ	
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	
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	
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	
수행한다.	
1. ~ 22. (생 략)	1. ~ 22. (현행과 같음)
2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	23
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	
에 근무하며 무선설비, <u>전기</u>	<u>전기통</u>
통신설비, 방송통신설비, 감청	신설비, 전기통신사업
설비,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	
지업자, 「전파법」 제58조의	
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	
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	
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	

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 가공무원 23의2. ~ 53. (생략) 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제4 제 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. 1. ~ 19. (생 략) 20.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 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 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. (생략) 나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「방송통신발전 기본 법」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

다. · 라. (생 략)

20의2. ~ 50. (생략)

  가. (현행과 같음) 나
·· <u>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</u> <u>사업</u>
  다.·라. (현행과 같음)
20의2. ~ 50. (현행과 같음)